

제421회 임시회
'24. 10. 11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25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출연목적

- 도민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
-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도 단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

○ 출연 내역 및 예정금액 : 2,118백만원

출연내역	예정금액	재원	비고
합 계	2,118백만원	국비 24%, 도비 76%	
사회서비스원 인건비	1,119백만원		
사회서비스원 운영·사업비	999백만원		

○ 기대효과

- 공공성·전문성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신뢰도 제고

-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
- 사회서비스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구심적 역할 수행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의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1)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음.

※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: 출자.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.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.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,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2025년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산출 기초는 아래와 같음.

<2025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산출 기초>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금 액	산 출 내 역	재 원
합 계	2,118		
사회서비스원 인건비	1,119	5,180천원×18명×12월=1,119백만원 ※ 인건비, 4대보험, 퇴직금, 제수당 등	국비 24% 도비 76%
사회서비스원 운영·사업비	999		

-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2024년도 출연금이 총 1,992백만원(산출근거: 인건비 1,160백만원-18명 기준-, 운영·사업비 832백만원)2)이었던 것에 비해 운영·사업비 부분에서 소폭 늘었음.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2024년도 출연금은 2024년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을 합산한 금액임.

- 단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2025년도 직원수도 2024년과 동일한 18명이어서,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 산출액이 증가하는 것이 타당한데 오히려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-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출연은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³⁾에 따른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,
 -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관련사업을 수탁·운영하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 직원 등의 인건비 지출 및 운영·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을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 및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
3)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보조금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